

의안번호	2214046
의 퇴 인	김형동 의원
회 답 일	2025. 11. 20.
추계번호	25F5996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혁신도시·도청이전신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

국회의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
1	안 제63조의3 신설 (혁신도시·도청이전 신도시 입주기업에 대 한 법인세 등의 감면)	○ 「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 및 「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에 입주하는 기업의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신설 - 감면율: 3년 100%, 그 다음 2년 50% - 감면대상사업: 대통령령으로 규정 - 감면한도: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50% + 감면대상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×1,500만원* * 청년 상시근로자 등의 경우 2,000만원 - 적용기한: 2028.12.31.까지 입주하는 기업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63조의3 신설 (혁신도시·도청이전 신도시 입주기업에 대 한 법인세 등의 감면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에 따라 혁신도시¹⁾ 및 도청이전신도시²⁾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·소득세 감면을 신설할 경우 법인·소득세수의 감소가 예상됨
- 개정안에 따른 법인·소득세수 감소액을 추계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‘감면대상사업’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지만, 현재 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워 세수효과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음
- 또한 기준이 마련되더라도 향후 해당 지역으로 입주할 기업에 대한 정보(매출액, 상시근로자 수 등)를 합리적으로 추정하는 것이 곤란하므로, 개정안의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어려움
 - 개정안에 따르면 투자누계액 및 감면대상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등을 반영하여 감면한도를 산출하나 현재로서는 이와 관련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움
- 참고로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에 대한 법인세 감면(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62조) 실적은 다음과 같음

[표 3]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법인세 감면 실적: 2019~2024년

(단위: 억원)

	2019	2020	2021	2022	2023	2024
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법인세 감면액	0.3	0.7	0.1	1	0.1	0

자료: 기획재정부, 「조세지출예산서」, 각 연도.

1) 이전공공기관을 수용하여 기업·대학·연구소·공공기관 등의 기관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혁신여건과 수준 높은 주거·교육·문화 등의 정주(定住)환경을 갖추도록 개발하는 미래형 도시를 말하며(「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3호), 2025년 11월 현재 부산, 대구, 광주·전남, 울산, 강원, 충북, 전북, 경북, 경남, 제주, 대전, 충남 등 12개가 지정

2) 도청 이전을 통해 신도시로 개발되는 지역으로, 2025년 11월 현재 충남 홍성군·예산군(충남도청), 경북 안동시·예천군(경북도청) 등 2개가 지정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신미정	백경엽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신미정	02-6788-4837	mjshin@assembly.go.kr